

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

(김형동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29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11. 17.

발의자 : 김형동 · 박성민 · 백종현

성일종 · 하영제 · 임병현

박대수 · 김희곤 · 배현진

김용판 · 황보승희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낙동강수계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 · 댐주변지역 또는 그 주민에 대하여 소득증대사업, 수도시설 설치사업과 같은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현재 수도시설 외의 생활기반시설, 공공체육 · 문화시설, 의료시설과 같이 실제 주민생활의 편의를 지원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나 지역의 교육 기반 확보를 위한 육영(育英)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음.

현행법과 동일한 취지로 제정된 「한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관련 항목이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, 형평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이에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육영 사업의 근거를 신설하여 상수원관

리지역·댐주변지역 또는 그 주민의 생활편익 및 교육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23조제2항제2호·제3호).

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2항제2호 중 “수도시설의”를 “수도시설 등의 주민편익시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공급 등의 지원”을 “공급 등 육영 지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3조(주민지원사업) ① (생략)</p> <p>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<u>수도시설의 설치지원 등 복지증진사업</u> 3. 교육기자재 <u>공급 등의 지원사업</u> 4. ~ 6. (생략) ③ · ④ (생략) 	<p>제23조(주민지원사업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수도시설 등의 주민편익시설</u> ----- 3. ----- <u>공급 등 육영 지원</u> ----- 4. ~ 6. (현행과 같음)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